

한국영화 검열과 등급분류 제도 변천사에 담긴 비윤리성 탐구

정수진

성균관대학교 예술학협동과정 박사과정

목차

1. 서론
2. 검열 제도와 데리다의 윤리
3. 한국영화 검열 제도 변천사
4. 검열 정책에 내포된 폭력성과 그 한계
5. 윤리적 검열 정책의 가능성
6. 결론

요약문

본 소논문은 자크 데리다의 법과 윤리에 대한 철학들을 바탕으로 정부 검열 시스템에 담긴 한국 영화 정책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군사독재 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영화 정책은 독재 정권의 프로파간다를 널리 알리고, 사회 통합과 안정을 내세우며 국가적 목표에 부합한 작품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맞춰왔다. 그리하여 모든 영화 관련 정책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 안에 존재했다. 그러한 정책은 단순히 영화 선택의 자유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영역까지 침범한다. 자크 데리다는 정의와 폭력과 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왔다. 데리다의 주장들은 윤리적 고찰과 연결되어 있다. 이 소논문은 데리다의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영화 검열 정책에 담긴 폭력성을 짚어보고 윤리적 검열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법, 윤리, 한국영화정책, 검열, 자크 데리다

1. 서론

2014년 열린 제19회 부산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부산시장이 <다이빙벨>에 담긴 정치적 시각을 이유로 영화제 측에 상영 금지 압력을 넣었으나 영화제 측에서는 상영을 강행하면서 영화제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적 대립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정부기관이 중심이 되어 표현의 자유와 관객의 볼 권리를 위협한 사건으로 많은 영화인들과 관객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봉준호, 최동훈, 김태용 감독을 배출하여 한국영화계 발전에 오랜 시간 이바지해온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졸업영화제가 2015년에는 제때 열리지 못했다. ‘다이빙벨 사태’ 이후 국내외 영화제 상영작들에 대해 예민한 시선을 보내온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졸업영화제 측의 영화등급면제 추천 신청을 일방적으로 보류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제 상영 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들은 상영등급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작품에 한해 일반 개봉작과는 다르게 상영등급 분류를 면제한다는 조항¹이 있지만 당시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영화제에서는 적용받지 못한 것이다.

이외에도 몇몇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영진위의 결정을 보자면, 영화에 대한 가치 판단을 감독과 관객에게 맡기지 않고 감독자로 존재하려는 듯하다. 영진위가 국내 영화산업을 지원육성하는 정부의 공식 산하기관임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태도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영화를 비롯하여 서적, 연극, 미술 등의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 측의 검열과 규제의 역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서양의 경우, 고대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자인 플라톤은 예술을 도덕적 검열과 판단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저서인

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 2호’를 보면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다. 비록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작품이더라도 영화제에서만만큼은 관객들이 직접 선택하여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인 것이다.

『국가론』에는 ‘시인추방론’을 담은 정도로 예술의 존재를 경계하였다. 중세 시대에는 강력한 지배층으로 군림했던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당시의 세태를 횡포를 풍자, 고발하는 많은 서적이나 미술작품을 신의 권위를 빌어 불태웠다. 군사 정권이 오랜 시간 세력을 잡고 있는 남미 여러 국가에서는 신문과 잡지 수백 개를 폐간시키고, 군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 가수의 손을 부러뜨리거나 공개처형을 하는 등 의도적인 문화 말살 정책을 펼쳤다.² 동양의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 진나라에서 강력한 국가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정치를 비판하는 서적을 불태워 버린 ‘분서갱유’나 공산당 집권 이후에 모택동 주도로 전통문화 말살 정책을 펼친 ‘문화대혁명’이 대표적인 문화 규제 정책이다. 그 안에는 ‘안정된 사회를 위해 올바른 이념의 정립을 내세우는 지배층’과 ‘반사회적이고 광폭하기 때문에 계몽 혹은 처치되어야 할 피지배층’이라는 개념이 담겨있다.

하지만 그러한 대립 구도에 대해 많은 사상가와 철학가는 부정적 견해를 표해왔으며, 사회비판적인 의식을 지닌 대중들의 저항도 거세졌다. 그리하여 이른바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오늘날 대다수의 민주국가에서는 문화에 대한 검열과 규제는 지양해야 할 정치적 숙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예술지원 정책에 있어 정부의 제한적 역할을 표방하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도 이러한 사회변화와 무관하지는 않다. 식민지 시대부터 군사독재 정권을 지나는 동안 전면적인 문화 검열과 규제가 존재하였으나,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된 이후 ‘예술 창작의 자유’가 법률³로 보장되어 행해지고 있다.

영화 분야와 관련된 정책을 보아도 제작 및 상영에 있어서 창작자의 표현 활동과 대중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영화법은 변화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영화제작 시에 사전검열에서 사전심의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자유로운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

² 나오미 클레인, 『쇼크 독트린』, 김소희 역, 살림biz, 2008, 140쪽.

³ 대한민국 헌법 22조를 보면 학문·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발명가·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다.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적인 법률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들게 된다.

이인호(2004)는 사전심의의 주체가 되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성격이 행정기관의 성격을 띠는 검열기관임을 지적하고, 그 심의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여 적용이 어려우며 또한 심의결정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근거로 그 위헌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등급분류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황창근(2008)과 권현영(2011)은 200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위헌선고를 받았던 등급분류부류가 제한상영가등급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라 분석한다. 그리고 위헌판결 이후에도 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한 표현물의 강제심의 강행, 심의 미필 표현물에 대한 공개 금지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강제적 처벌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짚어냈다⁶.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현행 한국영화 규제법의 존재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안정을 명목으로 유지되고 있는 검열로 인해 개인의 창작과 작품 선택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규제를 통해 기준에 맞지 않는 세력을 제거한다면, 남은 자들에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가능할 것인가.

20세기 사상가인 자크 데리다는 주체와 타자의 구분이 담고 있는 폭력성에 대해 여러 저서를 통해 언급했다. 특히 법과 정의 개념에 담긴 모순을 지적하여 그것의 절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본 소논문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해체주의를 주도한 자크 데리다가 언급한 윤리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영화 규제법이 가진 내부적 모순을 파악해보고, 향후 지양해야 할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를 위해 우선 데리다가 말하는 윤리성과 검열 제도와와의 상관관계를 따져보고, 한국영화 검열 제도의 변천사와 그 안에 폭력이 어떻게 내포되어 있는지 짚어본 다음, 윤리적 규제 정책이란 과연 가능할 수 있는지 데리다의 관점을 중심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4 이인호, 현행 영화검열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 법학논집 제28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5 황창근,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 세계헌법연구 제14권,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6 권현영, 영상물 등급분류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과제, 토지공법연구 제53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2. 검열 제도와 데리다의 윤리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는 프랑스의 사상가이다. 서양의 이성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유럽공동체와 주권, 마르크스주의나 인권 등에 대한 저작을 발표하고 현실 정치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남겼다.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중심 생각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⁷. '중심' 생각이란 '중심 이외'의 생각이 존재함을 전제하는 것이며, 그러한 사고는 '우리와 너희', '다수와 소수', '지배자와 피지배자'와 같은 대립구도와 연결된다. 이원적인 대립은 평화로운 공존의 질서가 아니라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한다. 그 결과, 인류사에는 끊임없는 반복과 다름이 나타나 왔고,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A에 대적하던 B'가 A를 누르고 살아남거나 A에 흡수되어 사라져버리는 과정으로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데리다는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동시에 존재할 때, 즉 공존불가능한 것들이 공존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주체-대상의 경계를 지우고 그 중간에 '의미화(개념화) 되지 않는 나머지'가 자리잡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기에는 고정될 수 없는 여러 가치와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데리다의 이러한 '차연(différance)' 개념은 세상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배 질서가 가진 폭력성에 대한 저항적 관점을 의미한다.

데리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이 쓴 에세이인 『폭력비판을 위하여』(1921)에는 법과 폭력을 분리하여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법의 원천은 보편성과 합리성을 규정하고 그것이 아닌 것을 악, 다시 말해 폭력으로 보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법이야말로 파괴성과 폭력성을 담보한다고 벤야민은 이야기한다⁸. 데리다는 그러한 내용들에 주목하며 『글쓰기와 차이』(L'Écriture et la différence)⁹, 『법의 힘』(Force de loi)과 같

⁷ 니콜라스 로일, 『데리다의 유명들』, 오문석 역, 알피, 2007, 57쪽.

⁸ 자크 데리다, 『법의 힘』, 진태원 역, 문학과지성사, 2004, 142-143쪽.

은 저서를 통해 현실 너머에 폭력이 없는 절대적 평화의 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이야기한다. 데리다에게 폭력이란 모든 제도에 내포되어 있기에 ‘폭력의 바깥’이란 없다⁹. 다시 말해, 사회의 안정 유지를 표방하여 제정되고 있는 많은 법규들은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그 존재 자체에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을 부인한다면 법에 담긴 내재적 모순을 극대화 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검열제도와 윤리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바깥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우선 인정해야만 한다.

“정의에 복종하는 것을 힘으로 강요할 수 없었으므로 힘에 복종하는 것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였다. 정의를 힘있는 것으로 만들 수 없었으므로 힘을 정의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정의와 힘이 결합하여 평화를 이루게 하였다. 이 평화야말로 최고선이다.”¹¹라는 파스칼의 통찰처럼 데리다는 법은 정의와 크게 연관되지 않으며 힘이 곧 정의고 그 정의를 뒷받침 하는 것이 법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영화 검열 제도의 윤리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담긴 폭력성을 인정하고 그것의 한계지점을 파고 들어 볼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한국영화 검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한국영화 검열 제도 변천사

최초의 한국영화는 1919년에 상영되었으며, 1930년대까지 <운영전>, <심청전>과 같이 고전문학을 영화화한 작품이나 <아리랑>, <임자 없는 나룻배>와 같은 민족정신이 담긴 영화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을 점

⁹ 자크 데리다, 『글쓰기와 차이』, 남수인 역, 동문선, 2001.

¹⁰ 정혜옥, 「데리다의 삶과 철학의 재조명-폭력론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23권,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11, 119쪽.

¹¹ 블레즈 파스칼, 『팡세』, 최현 역, 범우사, 2002, 138쪽.

령하고 있던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영화들을 제작, 유통시켰고 본격적인 검열 정책을 펼친다. 1922년 5월에는 ‘승행 및 흥행장 취체 규칙’을 제정하여 영화상영에 허가제를 도입한다. <아리랑> 이후에는 ‘활동사진 필름 검열규칙’을 제정하여 영화에 대한 검열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한 통제와 더불어 모든 영화제작을 관변단체에서만 할 수 있게 하여 영화를 선전도구로 활용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남한에 영향력을 행사한 미군에 의해 영화 관련법이 만들어지는데, 1946년에는 미군 정법령 제115호가 제정, 공포되고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보공보부에서 영화 검열을 담당하며 영화검열제가 정착되는 역기능을 갖게 된다.¹² 불온한 장면이 삽입되었다고 판단되는 영화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상영이 금지되었다.

이 시기에 영화 검열에 관계된 명문화된 기준은 ‘공연물 검열세칙’으로 제시되어 국가법률(國家法律), 종교(宗教), 풍속(風俗), 성관계(性關係), 잔학성(殘虐性), 기타(其他) 등 여섯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금지활동이 진행되었다.

1962년 공식적인 ‘영화법’이 제정되었고, 박정희 정권 이후 전두환 정권까지 정부주도로 강력한 규제와 통제가 담긴 영화정책이 시행된다. 영화사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연간 영화 제작편수를 조절하는 등 영화를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강력히 드러냈다. 또한 국산영화의 보호를 명목으로 외국영화 수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1972년 유신체제로의 이행과 1974년부터 취해진 긴급조치라는 초법적인 강력한 사회통제로 인해 자유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거의 무의미해졌다. 영화를 비롯한 모든 표현영역에 대한 검열은 유신헌법을 통해 합헌적인 행위로 인정되었다.¹³ 이 당시 영화 시나리오 사전심의를 담당했던 예술문화윤리위원회(이하 예륜)의 통계를 보면, 1970년도 수정·반려비율이

¹² 김동호, 『한국영화정책사』, 나남출판, 2005, 28쪽. (미국 정법령 제115호에 따라 1946년부터 1962년까지 12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 공보부에서 ‘영화공연 전 그 적부를 심사하여 허가할 권리, 영화의 전부를 허가 또는 불허할 권리’ 및 ‘부분삭제나 변경 허가권을 갖게 된다.)

¹³ 위의 책, 488쪽.

3.7%이던 것이 1971년에 25%, 1974년에 41%, 1975년에는 80%에 이르게 된다.¹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된 예륜의 검열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를 피하기 위해 문화공보부(이하 문공부) 장관이 위촉한 의원들로 구성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윤)가 1976년에 발족된다. 1980년 영화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일시 폐지되었으나 동시에 문공부 주도하에 공연물 심의강화 장기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영화법에 따라 영화제작 시에 문공부 장관에게 시나리오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심의제가 유지된다.

1984년에는 영화법 제5차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이전보다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1)영화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자유화 2)제작업자와 수입업자를 분리, 등록 3) 독립영화제도 신설 4)검열제를 심의제로 완화, 그 권한을 문공부 장관으로부터 공연윤리위원회로 이관 5)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3분의 1이상에서 5분의 2이상으로 강화”¹⁵ 등이 그것이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가 이뤄졌으나, 검열의 역사는 계속되었다. 정부는 규제의 완화와 통제의 강화를 반복하면서 검열의 연속성과 실질적인 규제를 유지한다.

그런 배경 하에 광주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제작된 영화 <오! 꿈의 나라>(1988)가 공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극장에서 상영되는 일이 발생하고, 문공부장관은 사전심의 위반으로 관련 인물들을 고발한다. 이에 영화의 제작자 강현은 1993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사전심의제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법 제12조 1,2항 및 제14조 1항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중 음반사전심의 조항인 제16조 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 그리하여 영화법은 영화진흥법(이하 영진법)으로 새롭게 개정되고 공윤 대신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하 공진협)이 설치된다. 영화법 시기에 영화 시나리오 및 장면의 삭제·수정·반려의 항목으로 영화의 검열이 실시된 것에 반해 공진협에서는 등급분류의 업무만을 수행

¹⁴ 위의 책, 489쪽.

¹⁵ 위의 책, 31쪽.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상영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영화의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상영금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법률상의 제재를 가하는 결정이 동반되면서 여전히 영화의 수정과 삭제를 유도하는 형태의 규정이 존재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제 1공약은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검열철폐”라고 전제하며, 이를 위해 ‘완전등급분류제, 심의기구 개선, 등급 외 전용관 설치 등으로 영화등급심의를 개선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¹⁶ 등급분류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내세우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신설되고 기존의 공진협은 해산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영등위 위원들이 공진협 심의의원 출신으로 구성되면서 단순히 외형상의 변화만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요소가 된다.

등급분류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2001년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영화의 상영 등급의 분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류하는 ‘상영등급분류 보류 제도’는 검열의 다른 형태라고 판단했다. 그러한 결과에 맞춰 2002년 제4차 영진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제한상영등급 부여와 제한상영관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한상영관은 설치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규제가 심해 실현가능성이 없었고,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상영을 위해 자진 수정이나 삭제를 감수한 뒤 재심을 받아야 했다. 결과적으로 제한상영등급은 영화의 상영기회를 박탈하거나 영화의 수정과 삭제를 유도하는 검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결국 영진법은 2006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폐지된다.

이후 검열과 관련된 큰 틀은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제한상영가’ 영화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한다. 또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을 영등위의 규정에 위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고, 제한상영가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수정을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¹⁶ 위의 책, 514쪽.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에 대한 정의를 넣는다.¹⁷ 또 상영등급에 대한 분류 기준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와 인권 존중에 관한 사항’ 등 여섯 가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와 선전은 제한상영관 안에서만 허용하는 것, 제한상영가 영화도 마찬가지로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한 것, 제한상영관에서는 다른 등급의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¹⁸ 2015년 12월 기준 국내에 제한상영관이 없는 관계로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를 받을 경우 일반 상영관에서의 개봉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것은 검열이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검열 정책에 내포된 폭력성과 그 한계

앞서 살펴보았듯 한국영화 검열 제도는 한국영화의 탄생과 그 역사를 나란히 한다. 배수경에 따르면 “한국의 영화검열 제도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것은 억압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기인하며 식민지 시대, 해방 후 미국의 영향을 벗어나 근대국가 형태를 취한 이승만 정권기까지도 영화검열은 엄격하게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를 오가며 시행될 정도로 당연한 것”¹⁹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영화의 검열업무를 전담했던 부서는 문교부가 아닌 선전·정보·언론을 다루는 공보처였다”²⁰는 것은 정부가 영화를 예술의 한 장르보다는 이념전파나 사회계몽을 위한 프로파간다적인 측면에서만 대했음을 드러낸다.

¹⁷ 영비법에 따르면 제한상영가 등급이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정의한다.

¹⁸ 이승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열 가지 판결』,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104쪽.

¹⁹ 김동호, 앞의 책, 488쪽.

²⁰ 김동호, 위의 책, 477쪽.

이후 영화 관련 법규가 제정되고 ‘검열’이 ‘심의’로 명칭을 달리하게 되었지만 영화를 사전에 통제하는 검열의 속성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영화 <오! 꿈의 나라>를 제작하고 심의의 부당함에 대해 위헌판결을 얻어냈던 강현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화 심의는 권력의 감시 통제 메커니즘이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에서 간접적이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전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덜 제한적 등급을 받아야 넓은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창작 단계에서부터 내재화시킨 것이다. 검열의 시선 속에서 창조적 상상력은 억압될 수밖에 없다”²¹면서 영화심의의 본질을 짚어낸다.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 각 분야에서 영화의 검열과 심의에 대한 문제제기²²가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 정책상에 유의미한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우선적인 가치로 내세우는 보수성을 띤 현재의 정권 하에서 창작의 자유는 점점 더 제한되는 경향²³을 보이고 있다.

데리다에 따르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놓은 검열과 규제 안에는 ‘억압구도(지배와 복종의 체제)를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추구’하겠다는 내재적 모순이 담겨 있다. ‘억압’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음에도 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순을 모른 척한다. 더구나 데리다에게 모두가 특정 기준을 통과하는(totally, all, universal, wholly와 같은 단어와 연결되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정신분석의 저항들(Resistances

²¹ [Cover Story] “눈엣가시 걸리기만 해”… 색안경 낀 검열의 눈(인터넷 한국일보,2014,3,1)

²² 학계의 경우, 이인호(현행 영화검열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2004), 황창근(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2008년), 권현영(영상물 등급분류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과제,2011년). 우현용(한국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규제적 특징 연구,2014), 양영철(민간자율 영화등급분류제도 도입방안,2014) 등이 논문을 발표하였고 관련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도, [사실 유신시대 방불케 하는 문화예술 검열(한겨레,2015,9,13)], ‘표현 자유’ 요구하며 공동대응 나선 영화인들(경향신문,2015,2,13)’, ‘영화제 상영작도 사진검열 받나(경향신문,2015,2,3)’, ‘중복 규제가 K팝 성장 발목 잡는다(2014,9,2)’, ‘영등위, 악몽 꿀 권리조차 뺏았다(한겨레,2014,2,18)’, ‘검열·배급권력에…뿔난 작은영화들(헤럴드경제,2013,7,19)’ 등 창작의 자유가 제한되는 현실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²³ 앞서 서론에 언급하였듯이 2014년 이후 영진위는 영화제 상영영화에 대한 상영심사를 면제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버리고 심의 실시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of Psycho-analysis)』이라는 저서를 통해 개인을 ‘제도 안에 존재하지만 제도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은 가능성을 지닌 singular(단독자)’로 일컫는다. 하지만 개인은 제도 안에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싶어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소외²⁴시킨다. 그리하여 사회가 제시하는 도덕성을 스스로에게 강요한다는 것이다.

데리다와 동시대를 살며 권력의 윤리성에 대해 주목했던 푸코는 ‘도덕(혹은 윤리)’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주류 사회의 사회통제 메커니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억압(장치)들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럼으로써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규율에 따르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주체 내지는 인간’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생산된 주체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들로 인식되어지게 된다²⁵고 했다. 이러한 인식은 앞서 데리다가 지적한 억압 구도와 연결되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자’와 ‘그 기준을 위반하고 벗어나려는 자’의 대결을 불러온다. 그리하여 권력을 지닌 이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다수의 동의 아래 위반을 일삼고 규칙에 저항하는 소수를 처벌할 권리를 가져오게 된다. 다수에게 불법이라 칭해지는 폭력을 근절하고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합법적 폭력 안에는 근본적 폭력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검열 정책이 처벌 그 자체가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법이 정의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존재한다면, 검열 정책을 통해 정의 사회가 이룩된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데리다에게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의 사회는 알리바이로만 존재한다. ‘지

²⁴ 개인은 주체로서 내면의 욕망과 대면하기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회의 법칙에 순응하여 스스로를 기표화시킨다.

²⁵ 미셸 푸코, 『성의 역사1: 지식의 의지』, 나남, 2001, 155-156쪽. (예컨대 감옥이나 군대, 경찰 등 눈에 보이는 억압기제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자기검열’이라는 세뇌교육의 집요함 같은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기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존재, 곧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규율과 규칙에 길들여짐으로써 생성되는 무의식적 자기 검열. 마치 기계장치처럼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어 신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통제 메커니즘을 푸코는 ‘생체권력’이라고 부른다.)

금 여기'의 내재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재적인 여러 가지 시도(예술, 자본, 법과 제도, 이상 사회 등)로써 일종의 판타지인 알리바이를 통해 당장의 눈속임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모순과 부당함은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타락해 있는 '지금, 여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공간을 찾아 떠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지금, 여기'의 내부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구원의 지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²⁶ 합법적 폭력을 통해 폭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검열과 규제와 같은 법적인 제제는 불순물을 제거한 이상 사회가 가능하다는 일종의 판타지를 추구하는 것일 뿐, 아무리 수정하고 고민해본들 정의가 실현되는 공간은 존재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검열 제도에 대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일까?

5. 윤리적 검열 정책의 가능성

데리다에 따르면 검열과 규제가 있는 곳에는 동시에 저항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 본 한국영화 검열 정책 안에는 이미 저항의 지점이 담겨 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건데, 한국영화 검열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저항의 가능성을 드러내 온 행위이다. 내부의 틈을 파고들기 위한 그러한 시도들이 있어왔다는 것은 윤리적 검열 정책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하지만 '정-반-합'을 찾아가는 기존의 검열 수정 과정으로는 여전히 윤리적 답을 구하기 어렵다. 그것은 '주체/객체', '선/악', '이성/광기', '동일성/차이'처럼 이항 대립 구조를 전제로 한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존 구조 하에서는 어떤 가치를 인정하면 그에 반하는 다른 가치는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 하지만 데리다는 '차연'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의는 다가가되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이념임을 강조한다. 그것은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

²⁶ Jacques Derrida, *Resistances of Psychoanalysi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p.308-310.

라 끊임없이 등장하는 타자를 통해 오염되는 불확실한 것이다. '부정한 것을 없앤다면 정의가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그저 알리바이자 일종의 눈속임일 뿐이다. 그러한 신화성은 체계의 폭력이나 상징 폭력을 비가시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 데리다는 벤야민의 '신적 폭력(divine violence)'이 바로 이러한 신화성이 가진 알리바이가 없는 폭력이자 인간의 개입에 의해 상징화되지 않은 폭력이며 규정되지 않는 도래할(to come) 폭력으로서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으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폭력'으로 바라본다. 결국 폭력의 정당화는 불가능한 것이다.

데리다의 사상을 토대로 할 때, 기존의 구조가 제거하려고 했던 '불경스러운 것, 소수가 지향하는 가치' 등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구조의 변형을 꾀하는 전략은 검열 정책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수 있다. 검열 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다면, 데리다가 타자에 대한 이해, 용서, 환대 같은 '무저항의 저항'을 제안했듯이 드러나는 충돌 없이 예외적인 것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런 예외 요소의 적극적 진입이 사회에 무질서라는 위협을 가져올지 모른다. 하지만 데리다는 그러한 위협에 대한 우려를 '자기 면역성'과 관련시킨다. "자기 면역성은 주권적 권력의 자기성과 계산 가능한 지식에 의해 재전유될 수 없는 모든 타자성을 개방시킨다."²⁷ 어떤 사회든지 다양한 타자들의 욕망을 품기 위해서는 갈등과 충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자기 면역성은 자기를 스스로를 더럽히고 탈을 내서 자신의 순수성을 지키는 방식을 통해 훗날 내부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따라서 영화 속에 사회적 통념에 반(反)하는 생각이나 장치들이 담겨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금지하는 현행 방식보다는 그러한 영화들을 상영, 유통시키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사회의 건강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어떠한 정책과 제도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반(反)하는 가치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데리다가 바라보는 법의 윤리적 가능성일 것이다.

²⁷ 한병철, 『권력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2011, 158-159쪽.

6. 결론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영화는 반공 사상 고취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어 군부독재 시대에도 정부 정책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어, 창작자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여러 제약이 존재했다. 문민정부 이후에도 영화 제작 과정 및 상영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통제 의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안에는 해당 정권의 입맛에 맞게 특정 취향이나 가치를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중심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회 안정을 명목으로 유지되고 있는 검열로 인해 개인의 창작과 작품 선택의 자유가 위협받기도 한다.

본문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해체주의를 주도한 자크 데리다가 언급한 윤리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영화 검열 제도가 가진 내부적 모순을 점검하였다.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초기에 관련법은 미군에 의해 만들어졌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상영이 금지되었다. 이후 공식적인 ‘영화법’이 제정되었고, 박정희 정권 이후 전두환 정권까지 정부주도로 강력한 규제와 통제가 담긴 영화정책이 시행된다. 그러다 영화법은 영화진흥법으로 새롭게 개정되는데, 영화법 시기에 영화 시나리오 및 장면의 삭제·수정·반려의 항목으로 영화의 검열이 실시된 것에 반해 영화진흥법 아래서는 등급분류로 규제를 실현한다. 상영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영화의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상영금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법률상의 제재를 가하는 결정이 동반되면서 여전히 영화의 수정과 삭제를 유도하는 형태의 규정이 존재했다.

자크 데리다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놓은 검열과 규제 안에는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폭력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내재적 모순이 담겨 있다. ‘폭력’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음에도 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순을 모른 척한다. 한국영화 검열의 역사 안에도 역시 그러한 모순점과 부당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알랭 바디우는 “철학은 올바른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데에 있다”고 했다. 그것은 ‘올바른 답’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대와 이념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제시하였듯이 ‘사회 안정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검열로 인해 개인의 창작과 작품 선택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규제를 통해 기준에 맞지 않는 세력을 제거한다면, 남은 자들에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제각각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역사를 돌아보건대 국가 권력의 강력한 문화 검열 및 규제는 해당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을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로 규정하여 개인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향후 한국영화 검열 정책이 보다 윤리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법을 개선하여 영화를 분류하는 입장으로 그 방향성을 가져가야 한다.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완성된 작품들이 관객과 직접 만나고 해석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억눌려 있던 미적 표현방식과 사고들이 가감 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이야말로 윤리성이 담긴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동호, 『한국영화정책사』, 나남출판, 2005
- 나오미 클레인, 『쇼크 독트린』, 김소희 역, 살림biz, 2008
- 니콜러스 로일, 『데리다의 유명들』, 오문석 역, 엘피, 2007
- 미셸 푸코, 『성의 역사1: 지식의 의지』, 이규현 역, 나남, 2001
- 블레즈 파스칼, 『팡세』, 최현 역, 범우사, 2002
- 이승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열 가지 판결』,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4
- 자크 데리다, 『글쓰기와 차이』, 남수인 역, 동문선, 2001
- 자크 데리다, 『법의 힘』, 진태원 역, 문학과 지성사, 2004
- 한병철, 『권력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2011
- Jacques Derrida, *Resistances of Psychoanalysi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논문

- 권현영, 「영상물 등급분류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과제」, 『토지공법연구』 제53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 양영철, 「민간자율 영화등급분류제도 도입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한국콘텐츠학회, 2014
- 우현용, 「한국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규제적 특징 연구」, 『현대영화연구』 제19권,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4
- 이인호, 「현행 영화검열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 『법학논문』 제28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 전우형, 「훼손과 분리의 영화 신체에 담긴 실험적 의미- <바보들의 행진>의 검열 대응과 영상언어의 실험」,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7권, 2012
- 정혜옥, 「데리다의 삶과 철학의 재조명-폭력론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23권,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11
- 황창근,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 『세계헌법연구』 제14권,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기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온라인 경향신문, 〈영화계 상영작도 사전검열 받나〉, <http://opinionx.khan.kr/7389>,
(검색일: 2016.1.9)

온라인 경향신문, 〈‘표현 자유’ 요구하며 공동대응 나선 영화인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152047405&code=990101 (검색일: 2016.1.9)

온라인 한겨레신문, 〈유신시대 방블케 하는 문화예술 검열〉,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08637.html> (검색일: 2016.1.9)

온라인 한겨레신문, 〈영등위, 악몽 끝 권리조차 뺏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624702.html>(검색일: 2016.1.9.)

온라인 한국일보, 〈“눈엣가시 걸리기만 해”... 색안경 낀 검열의 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8&aid=0002472866>, (검색일: 2016.1.9.)

온라인 헤럴드경제, 〈검열·배급권력에...뿔난 작은영화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719000184&md=20130722003515_BL (검색일: 2016.1.9)

Abstract

A Study on Immorality in the Transition of Film Censorship and Rating System in Korea

CHUNG, Sujin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 Dep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Studies of Art

This essay aims to examine Korean motion picture policy on the government censorship system from Jacques Derrida's thought associated with sense of ethics. Korean motion picture policy has focused on protection of domestic films to achieve a national goal from military dictatorship regime, so-called people unification or social stability. It also aimed to spread propaganda for despotic government. Thus, the government keeps tight control over all motion picture policy. It restricts not only freedom of choosing movies but also creativity from artist. Derrida used to talk about the justice and violence law. Derrida's thought is connected with the ethical consideration. This research concerned about the violence within film censorship policy of Korean government and explore possibilities of ethical censorship policy from Derrida's perspectives.

Keywords

Law, Ethics, Korean film policy, Censorship system, Derrida
